

보수규정

제정 2009. 05. 27.
개정 2010. 07. 13.
개정 2011. 01. 06.
개정 2012. 09. 06.
개정 2014. 10. 24.
개정 2014. 12. 30.
개정 2015. 10. 01.
개정 2016. 05.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는 연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6.5.31.>
2. 계약연봉은 1년 단위로 근로자와 체결한 임금을 의미하며, 각 호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5.31.>
 - ① 기본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임금 인상율 차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성과연봉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수당” 이라 함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1.1.6.>
5. “성과급” 이라 함은 제14조의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12.9.6.>
6.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7. 직무급은 보직 및 직무의 난이도, 중요성 등 직무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신설 2016.5.31.>**

제 2 장 보수의 산정

제4조(보수의 구성)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연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13.> <개정 2011.1.6.>

② 계약직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연봉의 구성) 제4조 제1항의 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개정 2011.1.6.>

제6조(임직원의 연봉) ① 상근임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별표의 연봉지급범위 내에서 직무경력, 내용과 업적 및 역량평가 등을 토대로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별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6.5.31.>

③ 직원의 연봉산정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 경영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직원의 일정 연령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항신설 2015.10.1.>

제7조(보수의 지급 등)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산방법) ① 퇴직·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의 해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이 월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며, 월 10일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전직, 복직·정직 또는 감봉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급여의 일할액은 월급여의 30분의 1로 한다.

④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미만의 단위는 절사한다.

제9조(신규채용자의 연봉산정)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10조(휴직자 외 보수 등) 휴직자 외의 징계처분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수의 지급

제11조(연봉계약) ① 직원의 연봉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직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당해연도에 근무 중인 직원의 차기연도 연봉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원장이 정한다.

③ 진흥원은 성과연봉제 원칙을 준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31.>

제12조(연차수당)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정상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당해 연도 근무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을 토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성과연봉으로, 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산정한다

③ 자체성과급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른 기준 월봉의 100%로 한다

④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과 자체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6.> <개정 2012.9.6.>

제15조(연봉조정시기) 연봉조정은 일괄적으로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임용, 승진, 파견, 휴직, 징계 등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연봉조정을 실시한다.

제16조(선급제도) 직원을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외로 파견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견 당해연도의 6월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제17조(복리후생비) ①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보험

2.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3.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지원

4. 기타 원장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7.13.>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방법 및 대상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퇴직금

제18조(지급사유) 퇴직금은 진흥원에 1년 이상 근속한 상근임원과 직원(계약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시
4. 고용계약 만료 시
5. 진흥원 해산 시
6. 중간정산 신청 시

제19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월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월수(3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0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임용일부터 기산하여 만 12월을 1년으로 하고, 만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②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 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54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무급휴직기간(인사규정 제32조 제7호의 육아휴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퇴직금의 특례) <조항 삭제 2014.10.24.>

제23조(퇴직금의 지급제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제25조(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24조(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 5 장 복지후생

제25조(수혜대상) 복지후생의 수혜대상은 임직원으로 한다.

제26조(복지후생 지원)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각종 보조비 및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건관리) 임직원의 보건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직무상 질병치료의 보조) 임직원이 진흥원 업무수행 중 부상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9조(복지기금) ① 특수한 복지사업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기금은 진흥원 자체수입 및 기타 재원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연봉기준표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상근임원	80,000,000	150,000,000
B.U.M./G1급	55,000,000	85,000,000
G2급	45,000,000	75,000,000
G3급	35,000,000	65,000,000
G4a급	25,000,000	55,000,000
G4b급	15,000,000	45,000,000